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4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305,3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4,531,6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095,63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218,932,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산물 유통·가공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6. 9. 25. B, C 등으로부터 [redacted]시 D 전 4,648㎡ 외 2필지 합계 6,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합계 5,922,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1.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36,16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858㎡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 7. 2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본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303,950원, 지방교육세 41,709,450원, 농어촌특별세 2,745,370원의 합계 324,758,7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게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3,713㎡(6,571㎡ - 2,858㎡)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 218,932,66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0. 3. 6. 원고에게 취득세 190,305,3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4,531,640원, 농어촌특별세 4,095,630원의 합계 218,932,6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858㎡ 및 이 사건 건물만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 중 3,713㎡에 관하여는 본래의 목적사업 용도대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2.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713㎡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 3.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내용과 모순되고 사실에도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1)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친환경 식물공장을 건설하여 수경재배로 각종 상추, 미나리, 야채를 생산하고 판매점을 설치하여 야채를 판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이 사건 토지가 해당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이 사건 건물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858㎡ 및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2019. 8. 14. 및 2019. 11. 18.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음식점(E)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조사에서도 '출입구 기준 좌측에 소량의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조사 내용과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토지 중 2,858㎡를 제외한 나머지 3,713㎡에 대해서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한 내역이 없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의심되는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3,713㎡에 대해 감경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14, 1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6. 11. 18.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난 2019. 8. 및 2019.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내지 잡종지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취득일부터 1년 내 기간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것은 아닌 점, ② 더욱이 피고는 2018. 7. 20.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858㎡만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나머지 3,713㎡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3,713㎡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201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713㎡를 취득일인 2016. 11. 18.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